

2022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I. 제 안 경 위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II. 제 안 사 유

- 민생경제 회복, 방역체계 강화 등을 위해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III. 추가경정예산(안)

1. 총 괄

가. 세입예산 : 해당없음

나.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1,395,113	1,260,679	134,434	10.7%	
일	반 회 계	657,050	545,565	111,485	20.4%	
특 별 회 계	소	계	738,063	715,114	22,949	3.2%
	교통사업특별회계	38,296	31,960	6,336	19.8%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825	3,825	-	-	
	도시개발특별회계	695,942	679,329	16,613	2.4%	

2. 회계별 사업내역

가. 세입예산 : 해당없음

나. 세출예산

1) 일반회계

사 업 내 역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486,452	374,967	111,485		
계속사업	재난관리기금 적립	473,024	365,924	107,100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일상회복 지원금 등 편성	p. 577
계속사업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재난관리기금)	8,918	6,333	2,585	○'21.12월 의결된(소상공인 지킴자금 등) 지방채 2,000억원 이자 상환금 편성	-
계속사업	도로유지 일상관리	4,510	2,710	1,800	○야간 시도상 도로소파 등 긴급상황에 신속한 대처를 위한 긴급출동용역 보강 확대	p. 600

2) 교통사업특별회계

사 업 내 역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24,184	17,848	6,336		
계속사업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교통개선분담금 계정)	24,184	17,848	6,336	○'229월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지하차도 준공을 위한 잔여사업비 편성	p.595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해당없음

4) 도시개발특별회계

사 업 내 역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44,803	28,190	16,613		
계속사업	울곡로(창경궁앞) 구조개선	14,023	9,500	4,523	○'22년 공사 완료를 위한 잔여 사업비 편성	p.582
계속사업	금호로 확장	800	500	300	○금호로 확장 공사 구간 지장건물 철거공사비 편성	p.587
계속사업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	13,308	8,700	4,608	○'21년도까지 교부가 결정된 금액의 미지급 잔액 편성	p.591
계속사업	도림천복개(좌안) 보수	800	500	300	○'21년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에 따른 보수비 편성	p.604
계속사업	외발산지하차도 보수	1,846	-	1,846	○'21년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에 따른 보수비 편성	p.609
계속사업	중치량노선 시설물 성능개선	9,990	5,990	4,000	○개봉고가차도 성능개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비 편성	p.613
계속사업	개봉철도고가 바닥판 교체 정비공사	3,742	3,000	742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22년 감리비 부족분 편성	p.617
계속사업	공단C 보수공사	294	-	294	○'20년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에 따른 보수비 편성	p.621

IV. 검토의견

1. 개요

1) 일반회계

가) 세입 : 기정예산과 동일

나) 세출 : 기정예산 대비 20.4% 증가한 6,570억 50백만원

2) 교통사업특별회계

가) 세입 : 기정예산과 동일

나) 세출 : 기정예산 대비 19.8% 증가한 382억 96백만원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가) 세입 : 기정예산과 동일

나) 세출 : 기정예산과 동일

4) 도시개발특별회계

가) 세입 : 기정예산과 동일

나) 세출 : 기정예산 대비 2.4% 증가한 6,959억 42백만원

- 침체일로의 민생경제 회복과 신속하고 유연한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을 위해 금회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서울시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4조 2,449억 원 대비 2.5%(1조 1,239억 원) 증가한 45조 3,688억 원 규모로
- 추경재원은 20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8,303억 원), 국고보조금(89억 원), 세외수입(1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2,846억 원) 등임.

-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의 투입 주요 분야는 ‘민생·일상 회복(4,248억 원)’, ‘방역(2,061억 원)’, ‘안심·안전(1,130억 원)’이며,
- 이 중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금회 12건의 사업에 1,344억 34백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음.
- 안전총괄실 소관 세출예산안 중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민생·일상 회복’분야 중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재창업자, 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이며,
- 나머지는 ‘안심·안전’분야의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사업들과 주요 간선도로 공사 마무리를 위한 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음.
- 따라서 금회 안전총괄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민생·일상 회복’과 ‘안심·안전’분야에 해당하는 사업들로 시가 밝힌 추경의 목적에는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2. 분야별 검토 의견

가. 세입 예산안 : 해당 없음

나. 세출 예산안

(1) 일반회계

- 안전총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재난관리기금 적립’ 등 3건에 1,114억 8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표] 참조).

[표] 추경예산안 사업목록(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명	추경예산(A+B)	기정예산(A)	증감(B)	사유
총계			486,452	374,967	111,485	
1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적립	473,024	365,924	107,100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지원금 등 편성
2	안전총괄과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재난관리기금)	8,918	6,333	2,585	○'21.12월 의결된(소상공인지킴자금 등) 지방채 2,000억원 이자 상환금 편성
3	도로관리과	도로유지 일상관리	4,510	2,710	1,800	○야간 시도상 도로소파 등 긴급상황에 신속한 대처를 위한 긴급출동용역 보강·확대

1) 재난관리기금 적립 (사업별설명서 p.577)

- 동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1)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 재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3,659억 24백만원 대비 1,071억원(29.36%) 증가한 4,730억 2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473,024,103	(x-) 365,924,103	(x-) 107,100,000
기금전출금	(x-) 473,024,103	(x-) 365,924,103	(x-) 107,100,000

- 금회 증액분은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에 770억원,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과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급’에 각각 150억 5천만원씩을 계상한 것임.

[표] 추경예산안 사업목록(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연 번	사업명	사업개요	요구액
계			107,100
1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 지원대상 :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 지원요건 : 방역지원금(1차)을 수령하였고 경영위기 업종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지금 수령 소상공인	77,000

- 1)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지원규모 : 770억원 (개소당 100만원×7.7만개소)	
2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경제정책실 소관)	- 지원대상 : 서울지역 내 소상공인 - 지원요건 : 코로나19 이후('20)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22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 채용 3개월 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 유지 확인 후 지급 (6개월이상 고용효과) - 지원금액 : 150.5억원 (지원 150, 홍보비 0.5) (1인당 정액 150만원, 월 50만원 × 3개월) - 지원목표 : 신규 채용인력 약 10,000명	15,050
3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급 (경제정책실 소관)	- 지원대상 : ①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②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 - 지원요건 : '21.4.1.~'22.5.31.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2.6.30.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금액 : 150.5억원 (지원 150, 홍보비 0.5) (1인당 최대 150만원, 월 50만원 × 3개월) - 지원목표 : 무급휴직 근로자 약 10,000명	15,050

○ 먼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인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방역규제 완화에 대비하여 정부의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매출감감 경영위기업종²⁾ 소상공인(7.7만 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100만원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2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9조
- 지원규모 :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약 7.7만 개소
* 경영위기업종 : 국세청 신고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277개 업종
- 지원내용 : 개소당 100만원
- 지원대상 : 정부의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고, 경영위기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
- 총사업비 : 770억 원(개소당 100만원×7.7만개소)

○ 추경반영(안) : 재난관리기금 활용 (770억 원)

- 금회 지원계획은 매출은 10% 이상 급감했지만 연매출이 높아 서울시의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³⁾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7만7천 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며,

※ 지원대상 산정근거

□ 경영위기 일상회복지원금 대상

: 7.7만개 = 7만개(①경영위기업종 - ②지킴자금 수령대상) × 110% 추정

①경영위기업종 중 매출감소 10% 이상 희망회복지금 지원대상 모수 : 20만개

②지킴자금 수령대상 : 13만개(= 모수 20만개×연매출 2억 미만 72%×임차비율 91.5%)

- 이들 지원대상은 정부의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면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여 정부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지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하고 있으며, 이에 지원대상 구분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정부 손실보상은 정부 방역조치 대상에 대해서만 보상하므로 매출감소가 크나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 경영위기업종의 불만이 상존하고 있고,
- 서울시가 '22.2월부터 2억미만 영세 임차소상공인 대상으로 '지킴자금'을 지원 중이지만 업종특성에 따라 연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업종은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2) 경영위기업종 : 국세청 신고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277개 업종

3) 서울시가 지난 2월부터 2022년 본예산(재난관리기금) 5,000억원을 재원으로 연매출 2억 미만 임차소상공인 50만 개소에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 경영위기기업종의 불만과 서울시 지원의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사업 취지에는 공감할만하다 하겠음.

[표] 서울시 '지킴자금'과 금회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 사업간 비교

구분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공고일	'22.2.4	'22.5월 예정 (추경통과시)
지원규모	50만명	7.7만명
예산규모	5,000억원	770억원
매출액	2억 미만	무관
임차여부	임차 조건 충족	무관
지원자격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22.2.4.) 현재 서울에서 영업 중인 임차 사업장 - 개업일자가 '21.12.31. 이전이며,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고, 경영위기기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지원을 수령한 소상공인
업종	무관	277개 경영위기기업종 (버팀목자금플러스 수령 112개 업종 포함)

- 다만, 그동안 서울시의 현금 및 금융지원, 매출확대 지원 등과 '21.10.1일 「손실보상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손실보상(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피해보상) 및 각종 지원정책 등이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차기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 본 사업의 중복성 여부와 예산 투입 규모 대비 얻어지는 효과, 그리고 시행 시기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 **서울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현황**

【 **현금 지원** 】

- '20.5월 : **'자영업자 생존자금' 6,684억원 지원**
 - 서울지역 연매출 2억원 미만 소상공인 48만개소 지원(2개월 × 70만원)
- '21.4월 : **서울경제활력자금 지원 1,243억원 지원**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163천개소, 150~60만원 지원
- '21.4월 : **관광·문화예술인 등 업종별 지원 총 541억원**
 - 관광, 예술인, 버스운전종사자, 법인택시 기사, 고용유지지원 등 52천명
- '22..2월~ : **임차소상공인 지원 등 총 8,075억원 지원(계획수립중)**
 - 임차소상공인 5천억원, 관광업 165억원, 특고프리랜서 1,280억원 등

【 **금융 지원** 】

- 2020년 : **총 7조 5,315억원 지원(보증 5조 1,249억원/자금 2조 4,066억원)**
- '20.1월 : **피해업종 제로금리(0.5% 수준) 지원 총 8천억원**
- '21.2월 : **민생안정자금 1조원 추가 공급**
- '21.6.9~ : **4무 안심금융 2조원 지원**
 - 소상공인의 부담·불편없는 4無(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금융 지원
- '21.11.1~ : **4무 안심금융 3천억원 추가 지원**
 ※ 4무 안심금융 지원실적 : 88,185건, 2조 2,750억원 ('21.12월말 기준)
- '22.1~ : **4무 안심금융 1조원 지원**
 ※ 4무 안심금융 지원실적 : 12,428건, 3,787억원('22.2월말 기준)

【 **매출확대 등 기타** 】

- 2020년 : **서울사랑상품권 7,911억원 발행**
- 2021년 : **서울사랑상품권 총 1조 816억원 발행, 폐업소상공인 재기지원 등**
- 2022년 : **서울사랑상품권 총 8,417억원 발행 예정** ※ '22.1월 4,866억원 발행

[표] 정부의 코로나 생존지원 현황(2020~2021)

구분	2020년	2021년
지원금	○새희망자금(1~2백만원) 3.28조원	○버팀목자금(1~3백만원) 4.1조원 ○버팀목자금 플러스(1~5백만원) 6.5조원 ○희망회복자금(0.5~20백만원) 4.22조원 ○방역지원금1차 (1백만원) 3.2조원 ※ '22.1월 방역물품비 지원(10만원) 1천억원 ○방역지원금2차(3백만원) 10조원

금융지원 등 기타	○총 12조원 소상공인 자금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5.5조원 ○임대료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일상회복 특별융자 1%대 2조원 공급 ○여행숙박업 대상 관광기금 최대 1% 금리제공 ○손실보상 등 대상 94만개 2달 전기로, 산 재보험료 최대 20만원 경감
소비촉진	○긴급재난지원금(소득하위 70%, 9.1조원) ○5대 소비쿠폰 공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3→6조원) 및 할인율(5→10%) 확대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70→100만원) 및 발행규모(2.5조→3조) 확대	○소비쿠폰 2,300억원 추진(11.1~)
손실보상	-	○3분기 손실보상 대상 90만, 2.4조원 (10만원~ 최대 1억원) ○4분기 손실보상 대상 90만, 2.2조원 (50만원~ 최대 1억원)

- 다음으로, 경제정책실 소관인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했다가 재창업한 기업체 중 ’22년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에 대해 3개월간 1인당 총 150만원(월50만원×3개월)을 지원하려는 것이며,
- 소요금액(홍보비 5천만원 별도)은 신규 채용인력 약 1만명분으로 추계하여 150억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임.

※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2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8조 2항 2호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7조 3호
- 지원대상 : 서울지역 내 소상공인

※ 지원 제외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중소벤처기업부)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중기부) 〉 : 유흥주점, 도박, 약국, 성인용품, 금융, 보험 및 연금업, 보건업, 부동산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등

- 지원요건 : 코로나19 이후('20)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22년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채용 3개월 후 신청, 3개월 간 고용보험 확인 후 지급)
- 지원금액 : 3개월 간 총 150만원 지원(1인당 월 50만원)
- 지원목표 : 신규 채용인력 약 1만명

○ 추경반영(안) : 재난기금 활용(150.5억원)

-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폐업했던 소상공인이 재창업한 경우 신규인력 채용에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이해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 재창업 소상공인의 신규 채용인력 1만명이 추계치에 해당하는바, 집행 과정에서 예산 부족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해 보임.
- 다음으로, 경제정책실 소관인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급'은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⁴⁾과 50인 미만 기업체를 대상으로 '21년 4월 1일부터 '22년 5월 31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2년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1인당 최대 150만원(월 50만원×3개월)을 지원하려는 것이며,
- 소요금액(홍보비 5천만원 별도)은 무급휴직 근로자 약 1만명으로 추계하여 최대 3개월까지 1인당 총 150만원(월50만원×3개월)을 계상한 것임.

4)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노동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2
 -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취업취약계층”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으로 규정
- 유급휴직이 어려워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실업급여(월 최대 198만원)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무급휴직자는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 및 이직이 어려운 대상으로 판단, ‘취업 취약계층’에 부합하다고 판단됨
- 지원대상 : ①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②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
 - ▶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노동부) :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여행, 관광숙박, 공연 등 현 15개 업종)
- 지원요건 : '21.4.1.~'22.5.31.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2.6.30.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금액 : 최대 3개월까지 총 150만원 지원(1인당 월 50만원)
- 지원목표 : 무급휴직 근로자 약 1만명

○ 추경반영(안) : 재난기금 활용(150.5억원)

- 이 역시 코로나19로 장기간 무급휴직에 처한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서울시가 일정부분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소비 진작에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 마찬가지로 무급휴직 근로자 대상 인원 1만명이 추계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예산 부족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에 대비가 필요하다 하겠음.
- 참고로, 상기 경제정책실 소관 2개 사업은 경제정책실 “민생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일자리 정책 추진계획”(일자리정책과-4746, '22.3.15.)에 따른 5개 추진사업의 일환임.

☐ **민생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일자리 정책 추진계획 - 일자리정책과**

분 야	추진목적	주 지원대상	예산 (백만원)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소상공인 신규채용자 (10,000명)	15,050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급	· 코로나19 피해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	소상공인,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근로자(10,000명)	15,050
뉴딜일자리 신규 추진	·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형 뉴딜일자리 추진	소상공인, 제조업, 문화·관광, 1인가구, 경 단녀(500명)	8,719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확대	· 시책 관련 공공일자리 확대, 취업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구축	폐업자, 취업취약계층 (1,076명)	10,000
일자리 매칭 강화 전담 창구 개설	· 청년-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취업희망 청년	400

- ▶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 창출 및 유지지원을 통한 재기발판 마련
- ▶ 취약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일자리 제공 및 취업연계 강화
- ▶ 일자리 매칭 전담 창구를 개설하여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 완화

○ 한편, 상기 3개 지원사업 예산 1,071억원을 금회 일반회계에 직접 편성하지 못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여 지출하려는 것은 서울시가 현금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지출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⁵⁾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며,

○ 이에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⁶⁾에 근거하여 「재난

5)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6)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법적 근거가 명시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지출하려는 것으로 부득이한 조치라 사료됨.

- 다만,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은 사업별로 승인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승인을 받아 시가 지출계획 수립 후 자체 기금 운용심의회를 거쳐 지출하기 때문에 추정안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의 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 서울시는 집행 과정에서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변동이 있을 경우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집행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의 건전 운용을 도모해야 할 것임.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 차. (생략)

5.6. (생략)

③ ~ ⑤ (생략)

2) 도로유지 일상관리 (사업별설명서 p.600)

- 동 사업은 도로유지관리 수준 향상과 철저한 공정·품질·안전관리로 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27억 1천만원 대비 18억원(66.4%) 증가한 45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4,509,780	(x-) 2,709,780	(x-) 1,800,000
사무관리비	(x-) 75,100	(x-) 75,100	(x-) 0
공무원 교육여비	(x-) 4,680	(x-) 4,680	(x-) 0
포상금	(x-) 14,000	(x-) 14,000	(x-) 0
시설비	(x-) 4,200,000	(x-) 2,400,000	(x-) 1,800,000
시설부대비	(x-) 216,000	(x-) 216,000	(x-) 0

- 금회 증액 사유는 야간시간(18시~익일9시) 중 발생한 도로파손, 낙하물 처리 등 현장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긴급출동 용역시간을 확대하고 현장 출동시 안전확보를 위한 출동인원을 보강하려는 것임.
- 현재 6개 도로사업소의 긴급출동용역반 운영은 사업소별로 운영시간과 인력편성 현황이 약간씩 다르나 평균 10시간을 운영([표] 참조)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긴급출동용역반 미운영

시간에 발생하는 현장 민원은 사업소의 당직 직원이 출동하여 처리하고 있는 형편임.

- 따라서 야간의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각 사업소의 긴급출동용역반의 출동 인력을 3명(3교대 총 9명)으로 보강하는 한편, 운영시간을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일 15시간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파악됨.

[표] 각 사업소별 긴급출동용역 운영현황 및 계획

구분	동 부	서 부	남 부	북 부	성 동	강 서
용역 기간	12개월 (’22.1 ~12.)	12개월 (’22.1 ~12.)	12개월 (’22.1 ~12.)	12개월 (’22.1 ~12.)	11개월 (’22.2 ~12.)	10개월 (’22.2 ~12.)
운영 시간	21시 ~ 익일 06시	22시 ~ 익일 06시	18시 ~ 익일 09시	22시 ~ 익일 06시	19시 ~ 익일 06시	21시 ~ 익일 08시
출동 인력	3인	3인	2인	3인	3인	3인



운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18시 ~ 익일 9시 ▪ 운영인력: 3인 3교대 (총 9명)
----------	--

- 이는 6개 도로사업소가 현재 주간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대에 운영하고 있는 긴급출동용역반의 운영시간과 운영인력에 대해 통일성 있게 보강함으로써 긴급출동 업무의 신속성과 대응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 바,
- 긴급출동의 공백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도로관리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긴급출동용역반을 운영하는 시간대에 도로사업소가 용역업체의 활동에 대한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교통사업특별회계

- 안전총괄실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교통개선분담금 계정)’ 1건에 63억 3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표] 참조).

[표] 추경예산안 사업목록(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명	추경예산 (A+B)	기정예산 (A)	증감 (B)	사 유
총 계			24,184	17,848	6,336	
1	도로 계획 과	제2자유로 종점부 (난지도길) 입체화 (교통개선분담금 계정)	24,184	17,848	6,336	○ '22.9월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지하차도 준공을 위한 잔여사업비 편성

- 동 사업은 월드컵로 교차로 3개소(구룡사거리, 월드컵아파트3단지, 월드컵경기장 교차로)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 '22년 본예산안 수립 당시 시 재정여건 및 공정 추진현황을 고려해 '22년 준공에 필요한 예산 중 일부인 178억 48백만원만 편성하였으나, 금년 3월 기준 공정률이 73%로 추진이 원활하여 나머지 63억원을 금회 확보함으로써 기한 내 준공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다 하겠음.

[표]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잔여 공사비	22년 본예산(①)	추경(②)	비 고
합 계	24,183,701	17,847,701	6,336,000	
- 시설비	23,338,259	17,241,259	6,097,000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11,470	156,225	55,245	
토목공사비(지하차도,옹벽 등)	18,299,270	13,518,679	4,780,591	
전기/통신 공사비	1,466,163	1,083,135	383,028	
기계/설비 공사비	119,483	88,269	31,214	
자재비	3,241,873	2,394,951	846,922	
- 감리비	825,442	586,442	239,000	
- 시설부대비	20,000	20,000	0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해당없음

(4) 도시개발특별회계

○ 안전총괄실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울곡로(창경궁앞) 구조개선’ 등 총 8건에 166억 1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표] 추경예산안 사업목록(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명	추경예산 (A+B)	기정예산 (A)	증감 (B)	사 유
합 계			44,803	28,190	16,613	
1	도로 계획과	울곡로(창경궁앞) 구조개선	14,023	9,500	4,523	○'22년 공사 완료를 위한 잔여 사업비 편성
2	도로 계획과	금호로 확장	800	500	300	○금호로 확장 공사 구간 지장건물 철거공사비 편성
3	도로	자치구 장기미집행	13,308	8,700	4,608	○'21년도까지 교부가 결정된

	계획과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				금액의 미지급 잔액 편성
4	도로 시설과	도림천복개(좌안) 보수	800	500	300	○'21년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에 따른 보수비 편성
5	도로 시설과	외발산지하차도 보수	1,846	-	1,846	○'21년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에 따른 보수비 편성
6	교량 안전과	중차량노선 시설물 성능개선	9,990	5,990	4,000	○개봉고가차도 성능개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비 편성
7	교량 안전과	개봉철도고가 바닥판 교체 정비공사	3,742	3,000	742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22년 감리비 부족분 편성
8	교량 안전과	공단C 보수공사	294	-	294	○'20년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에 따른 보수비 편성

1) 율곡로 구조개선 등 3건 (사업별설명서 p.582, 587, 617)

- 도로계획과 소관의 '율곡로(창경궁앞) 구조개선', '금호로 확장공사'와 교량안전과 소관의 '개봉철도고가 바닥판 교체 정비공사' 등 총 3건은 금년에 준공이 도래한 사업으로 부족분을 편성하려는 것임.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연번	담당부서	사업명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1	도로계획과	율곡로(창경궁앞) 구조개선	14,023,000	9,500,000	4,523,000
2	도로계획과	금호로 확장공사	800,000	500,000	300,000
3	교량안전과	개봉철도고가 바닥판 교체 정비공사	3,742,000	3,000,000	742,000

- 여기서, ‘울곡로(창경궁앞) 구조개선’사업은 기정예산 95억 원 대비 45억 23백만원(47.6%) 증가한 140억 23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14,023,000	(x-) 9,500,000	(x-) 4,523,000
시설비	(x-) 13,258,000	(x-) 8,835,000	(x-) 4,423,000
감리비	(x-) 765,000	(x-) 665,000	(x-) 100,000

- 이는 본예산 편성 당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가 완료되지 않아 개략적인 사업비 9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1년 10월 문화재 심의를 완료하고 총사업비를 검토한 결과 45억 23백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임.
- 금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전체공정률 90%로 원활한 준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사료됨.

[표] 세부내역

구 분	당 초	추 가(증액)
산출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 : 9,500백만원 ○ 시설비 : 8,83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널 및 보도 공사 : 990백만원 - 계단설치 : 150백만원 - 디자인난간설치 : 93백만원 - 조경수목식재 : 958백만원천원 - 건축담장복원 : 4,450백만원 - 돌배수로설치 : 197백만원 - 기타 부대공사 : 383백만원 - 물가변동 : 564백만원 - 전기통신공사 : 500백만원 - 폐기물처리 : 100백만원 - 관급자재 : 450백만원 ○ 감리비 : 66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 : 4,523백만원 ○ 시설비 : 4,42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널상부 보행로 조성 : 818백만원 - 터널상부 담장복원 : 300백만원 - 터널상부 조경식재 : 607백만원 - 터널상부 연결로(승강기) : 2,400백만원 - 기타 부대공사 : 298백만원 ○ 감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및 전기 감리원 추가 : 100백만원
합계	14,023백만원(시설비 13,258백만원, 감리비 765백만원)	

- 다음으로, ‘금호로 확장공사’는 기정예산 5억원 대비 3억원 (60%) 증가한 8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동 사업 역시 금년 6월 준공 예정으로,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800,000	(x-) 500,000	(x-) 300,000
시설비	(x-) 800,000	(x-) 500,000	(x-) 300,000

- 기정예산은 건물 철거 및 도로확장 공사를 위한 것이었으나 명도소송 진행 등으로 그동안 철거가 지연되었던 2단계 구간 1개 동(전체 7동 중 마지막 철거 건물)에 대한 철거를 시행하면서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구조계산 이행 등을 이행하는 등 공사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이를 충당하려는 것임.

[표] 세부내역 및 현장사진

구 분	당 초	추 가(증액)
산출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 : 500백만원 - 포 장 공: 17백만원 - 이 설 비: 17백만원 - 철 거 공: 341백만원 - 토 공: 3백만원 - 구조물공: 51백만원 - 부 대 공: 26백만원 - 감 리 비: 4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 : 300백만원 - 포 장 공: 30백만원 - 이 설 비: 20백만원(구조계산) - 철 거 공: 250백만원 (소형장비 깨기공, 비계설치공 등)
합 계	800백만원(시설비)	



○ 다음으로, ‘개봉철도고가 바닥판 교체 정비공사’는 성능개선을 통해 교량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금회 기정예산 30억원 대비 7억 42백만원(24.7%) 증가한 37억 4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3,742,000	(x-) 3,000,000	(x-) 742,000
시설비	(x-) 2,719,000	(x-) 2,719,000	(x-) 0
감리비	(x-) 1,023,000	(x-) 281,000	(x-) 742,000

- 금회 증액 사유는 공사기간 연장('21.11월 준공→'22년 12월준공)에 따른 '22년 감리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금년 12월 준공을 위해 추경 필요성은 인정되나,

- 지난 본예산 편성 당시 사업비 재산정 과정에서 이미 반영되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예산편성의 정확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음.

2)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

(사업별설명서 p.591)

- 동 사업은 '20년 7월 실효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중 자치구에서 보상비 50%를 확보한 도로에 대해 도로 보상비를 지원(시:구=5:5)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 87억원 대비 46억 8백만원(53%) 증가한 133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13,308,000	(x-) 8,700,000	(x-) 4,608,000
자치단체자본보조	(x-) 13,308,000	(x-) 8,700,000	(x-) 4,608,000

- 시는 본예산 편성 당시 437억원을 편성했으나 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다 시급한 코로나19 대응 자원 확보와 본 사업에 대한 자치구 예산확보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당초 편성 예산을 87억원으로 감액 조정한 바 있음.
- 이에 시는 자치구 '21년 집행결과 및 이월액 자료를 수합해 검토한 결과 교부 잔액이 있는 8개 구를 대상으로 교부가 결정된 미지급 잔액이 1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기편성예산 대비 부족분을 금회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 그러나 금회 편성된 추경에는 '21년 교부결정액만 반영되어 있을 뿐 '22년 교부예정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동 사업의 추가적인 증추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참고로, 금회 편성액이 전액 지원된다는 전제하에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지원 예상 총액 2,338억원 중 60.7%가 교부되는 것이며,
- 당초 계획대로 금년 내 지원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2차 이후 추경에서 91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고 있어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을 위한 연차별 계획의 일부 조정이 필요해 보임.

[표] 예산 세부내역(안)

(단위: 백만원)

구분	총액	'19	'20		'21		'22(안)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상)	추경(하)
총계	467,600	42,700	144,500		83,348		197,052		
시	233,800		49,500	34,000	37,000	8,120	8,700	4,608	91,872
자치구	233,800	42,700	58,300	2,700	34,200	4,028	91,872		

3) 독립천복개(좌안) 보수 등 3개 사업 (사업별설명서 p.604, 609, 621)

- 아래 [표]의 '독립천복개(좌안) 보수' 등 3개 사업([표] 참조)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순위로 보수가 필요하다고 검토

되어 시설물의 보수·보강으로 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임.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연번	담당부서	사업명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1	도로시설과	도림천복개(좌안) 보수	(x-) 800,000	(x-) 500,000	(x-) 300,000
2	도로시설과	외발산지하차도 보수	(x-) 1,846,000	(x-) 0	(x-) 1,846,000
3	교량안전과	공단IC 보수공사	(x-) 294,000	(x-) 0	(x-) 294,000

- ‘도림천복개(좌안) 보수’ 사업은 ‘21년 준공된 정밀안전점검(’21.3.31~’21.11.25) 결과 복개구조물 포장부의 노후 및 균열 등이 추가로 조사됨에 따라 시설물 보수비용이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회 기정예산 5억원 대비 3억원(60%) 증가한 8억원을 편성하였는데,
 - 금년 10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어 추경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산 편성 시점에서 용역이 진행중이던 정밀안전점검의 중간 결과에 입각하여 추계 물량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보수예산 부족분이 발생하게 된 바, 향후 보수공사 예산편성 시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후 정확한 물량을 조사하여 예산을 산정토록 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외발산지하차도 보수’는 지하차도 내 타일 노후로 균열발생 및 탈락 등이 정밀안전진단(’21.3.20~’21.12.24)에

서 조사되어 지하차도의 타일을 보수하고 오염부를 도장하고자 18억 46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 지하차도 전구간에서 산재적으로 나타나는 타일 탈락으로 차량 통행시 차량 손상이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급성이 충분하다 하겠음.

○ 한편, ‘공단IC 보수공사’는 정밀안전점검 용역(’20.2.28.~’21.3.20.)에서 조사된 1램프 스틸박스 구간의 손상부(부식발생)가 급격히 심화되어 강재도장을 실시하고자 2억 94백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시설물 수명연장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다만, 도장 보수의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 측면에서의 보수가 아닌 내구성 확보 측면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본 사업의 시급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4) 중차량노선 시설물 성능개선(개봉고가) (사업별설명서 p.613)

○ 동 사업은 서울시 중차량 통행노선 시설물의 성능을 개선(DB18→DB24)하여 시민 안전 확보와 내구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개봉고가차도 성능개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기정예산 59억 9천만원 대비 40억원(66.8%) 증가한 99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9,990,000	(x-) 5,990,000	(x-) 4,000,000
시설비	(x-) 9,000,000	(x-) 5,000,000	(x-) 4,000,000
감리비	(x-) 990,000	(x-) 990,000	(x-) 0

- ‘개봉고가차도 성능개선 사업’은 당초 개봉고가 하행선(광명방향)개통 및 상행선(구로방향) 철거를 위한 시설비 50억원을 포함한 당해연도 본예산 59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승강기 설치 및 저소음 포장공법 변경 등의 민원(15억 54백만원 증액)과 작업시간 변경 등 유관기관(철도시설공단, 강서도로사업소, 서울경찰청)의 협의 내용(23억 34백만원 증액)을 반영하고자,
- '22년 1월 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여 총사업비가 233억 24백만원에서 77억 37백만원(33.2%)이 증액된 310억 61백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총사업기간이 92일 연장됨에 따라 7월 발주예정인 3차 공사의 사업비 중 부족분 40억원을 금회 편성한 것임.
- 사업계획 변경으로 공사물량이 늘어나고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계획공정대로 차질없는 사업진행이 가능한지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공정 추진현황을 고려하여 당해연도에 실질행 가능한 추가 사업비만 편성하는 노력이 필

요해 보임.

[표] 사업비 변경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금액(백만원)
민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중 임시계단 설치 (460) ▪ 보도육교 및 승강기 설치 (799) ▪ 교면포장 공법 변경 (콘크리트계열→개질아스팔트) (295) 		1,554
유관기관 협의내용	철도시설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비계 설치 및 해체작업시간 변경 (346) ▪ 방음벽(경의선 상행선 방향) 출입문 설치(철도) (8) ▪ 철도운행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투입비용 (298) ▪ 철도구간 레미콘 타설 변경 (41) 	2,334
	강서 도로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행선(구로구방향) 신축이음부 긴급보수 (15) 	
	서울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에 따른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 (40) ▪ 신설 거더 설치작업 시간 변경(주간→야간) (525) ▪ 상부 슬래브 바닥판 설치작업 시간 변경(주간→야간) (220) ▪ 공중비계 추가시설 (841) 	
안전사고예방 / 현장여건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통로 및 안전계단 설치 (82) ▪ 신설 거더의 소요자재(H형강) 수급방법 변경 (111) ▪ 공사중 차량 방호책 안전등급 상향 (150) ▪ 고용개선지원비 반영 (506) ▪ 임시 파쇄장 절단수 처리시설 설치 (6) ▪ 품질활동관리비 반영 (217) ▪ 코핑부 시공방법 변경 (141) ▪ 시스템비계 설치기간 변경 (42) ▪ 안전점검결과에 따른 교량하부 보수보강 (677) ▪ 교량점검시설 설치 (720) 		2,652
물가변동에 따른 금액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2020년 01월 1일(K=3.50%) ▪ 2회: 2021년 01월 01일(K=3.14%) 		756
준공기한 연기에 따른 감리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기술인 1인 ▪ 분야기술인(공무/공사/강교) ▪ 기술지원기술인 		441
총사업비 변경액			7,737

- 한편, 개봉고가차도가 경인선 철도와 남부순환로를 가로지르는 만큼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협의 지연 및 주민의견 수렴 부족 등으로 사업계획이 크게 변경되었고,
- 이로 인해 총사업비의 30% 이상 증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업비 변경 시점에서 총사업비의 25% 이상이 기 지출되어 투자심사 제외대상⁷⁾으로 분류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이 같은 부실한 사업추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7)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타당성 매뉴얼」(2020.12.), p.24 재심사(심사규칙 제6조)

실시설계 확정 후 설계변경으로 총사업비가 증가된 경우는 변경부분의 시공 이전에 심사(다만, 도로·건축물 등의 시설사업은 기성대가가 10% 이상인 경우와 기타사업은 총사업비의 25% 이상이 지출된 경우는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